# 「환경기본법」
# (제 2 장)

- **국 가·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평성5<1993>년 법률 제91호
- **공 포 일**: 1993년 11월 19일
- **개 정 일**: 2018년 6월 13일

| 원문 | 번역문 |
|---|---|
| 第二章 環境の保全に関する基本的施策 |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 시책 |
| 第一節 施策の策定等に係る指針 | 제1절 시책의 책정 등과 관련된 지침 |
| 第十四条<br>この章に定める環境の保全に関する施策の策定及び実施は、基本理念にのっとり、次に掲げる事項の確保を旨として、各種の施策相互の有機的な連携を図りつつ総合的かつ計画的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제14조<br>이 장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는 기본이념에 따라 다음 사항의 확보를 취지로 각종 시책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도모하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 |
|---|---|
| 一 人の健康が保護され、及び生活環境が保全され、並びに自然環境が適正に保全されるよう、大気、水、土壌その他の環境の自然的構成要素が良好な状態に保持されること。<br>二 生態系の多様性の確保、野生生物の種の保存その他の生物の多様性の確保が図られるとともに、森林、農地、水辺地等における多様な自然環境が地域の自然的社会的条件に応じて体系的に保全されること。<br>三 人と自然との豊かな触れ合いが保たれること。 | 1. 사람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적정하게 보전되도록 대기, 물, 토양, 그 밖의 환경의 자연적인 구성요소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보존될 것<br>2.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 야생 생물종의 보존, 그 밖의 생물의 다양성 확보를 도모함과 아울러 삼림, 농지, 수변구역 등의 다양한 자연환경이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될 것<br>3. 사람과 자연의 풍부한 교류가 유지될 것 |
| **第二節 環境基本計画** | **제2절 환경기본계획** |
| **第十五条**<br>政府は、環境の保全に関する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を図るため、環境の保全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以下「環境基本計画」という。）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br>2 環境基本計画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定めるものとする。<br>一 環境の保全に関する総合的 | **제15조**<br>① 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br>② 환경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br>1.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 |

| | |
|---|---|
| かつ長期的な施策の大綱<br>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環境の保全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推進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br>3 環境大臣は、中央環境審議会の意見を聴いて、環境基本計画の案を作成し、閣議の決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br>4 環境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閣議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遅滞なく、環境基本計画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br>5 前二項の規定は、環境基本計画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 고 장기적인 시책의 요지<br>2. 제1호 외에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br>③ 환경대신은 중앙환경심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각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br>④ 환경대신은 제3항에 따른 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br>⑤ 제3항 및 제4항은 환경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
| **第三節 環境基準** | **제3절 환경기준** |
| **第十六条**<br>政府は、大気の汚染、水質の汚濁、土壌の汚染及び騒音に係る環境上の条件について、それぞれ、人の健康を保護し、及び生活環境を保全する上で維持されることが望ましい基準を定めるものとする。<br>2 前項の基準が、二以上の類型を設け、かつ、それぞれの類型を当てはめる地域又は水域を指 | **제16조**<br>① 정부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소음과 관련된 환경상 조건에 대하여 각각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을 정한다.<br>② 제1항의 기준이 둘 이상의 유형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각각의 유형을 적용하는 지역 또 |

| | |
|---|---|
| 定すべきものとして定められる場合には、その地域又は水域の指定に関する事務は、次の各号に掲げる地域又は水域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行うものとする。<br>一 二以上の都道府県の区域にわたる地域又は水域であって政令で定めるもの 政府<br><br>二 前号に掲げる地域又は水域以外の地域又は水域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地域又は水域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者<br>イ 騒音に係る基準（航空機の騒音に係る基準及び新幹線鉄道の列車の騒音に係る基準を除く。）の類型を当てはめる地域であって市に属するもの その地域が属する市の長<br>ロ イに掲げる地域以外の地域又は水域 その地域又は水域が属する都道府県の知事 | 는 수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수역의 지정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실시한다.<br><br>1. 둘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에 걸치는 지역 또는 수역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곳: 정부<br>2. 제1호 외의 지역 또는 수역: 다음의 가[1] 또는 나의 지역 또는 수역 구분에 따라 해당 가 또는 나에서 정하는 자<br>가. 소음 관련 기준(항공기 소음 관련 기준 및 신칸센 철도 열차 소음 관련 기준을 제외한다) 유형을 적용하는 지역으로서 시(市)에 속하는 곳: 그 지역이 속하는 시의 장<br>나. 가의 지역 외의 지역 또는 수역: 그 지역 또는 수역이 속하는 도도부현의 지사 |

[1] 일본의 법조문 체계는 "편-장-절-관-목/조-항-호"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호의가/나" 또는 "가, 나"와 같이 번역함

| | |
|---|---|
| 3　第一項の基準については、常に適切な科学的判断が加えられ、必要な改定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③ 제1항의 기준은 상시 적절한 과학적 판단을 더하여 필요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 |
| 4　政府は、この章に定める施策であって公害の防止に関係するもの（以下「公害の防止に関する施策」という。）を総合的かつ有効適切に講ずることにより、第一項の基準が確保され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 ④ 정부는 이 장에 따른 시책으로서 공해방지와 관계하는 것(이하 “공해방지에 관한 시책”이라 한다)을 종합적이고 유효·적절하게 강구함으로써 제1항의 기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第四節　特定地域における公害の防止** | **제4절 특정지역의 공해방지** |
| **第十七条**（公害防止計画の作成）<br>都道府県知事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地域について、環境基本計画を基本として、当該地域において実施する公害の防止に関する施策に係る計画（以下「公害防止計画」という。）を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br>一　現に公害が著しく、かつ、公害の防止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に講じなければ公害の防止を図る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ると認められる地域<br>二　人口及び産業の急速な集中その他の事情により公害が著 | **제17조**（공해방지계획의 작성）<br>도도부현 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공해 방지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계획(이하 “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br>1. 실제로 공해가 심각하고 공해방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야만 공해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br>2. 인구 및 산업의 급속한 집중, 그 밖의 사정으로 공해 |

| | |
|---|---|
| しくなるおそれがあり、かつ、公害の防止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に講じなければ公害の防止を図ることが著しく困難になると認められる地域 | 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며, 공해방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야만 공해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
| **第十八条**（公害防止計画の達成の推進）<br>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公害防止計画の達成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 **제18조**（공해방지계획 달성의 추진）<br>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공해방지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
| **第五節 国が講ずる環境の保全のための施策等** | **제5절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 등** |
| **第十九条**（国の施策の策定等に当たっての配慮）<br>国は、環境に影響を及ぼすと認められる施策を策定し、及び実施するに当たっては、環境の保全について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 **제19조**（국가시책책정 등의 경우）<br>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 **第二十条**（環境影響評価の推進）<br>国は、土地の形状の変更、工作物の新設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事業を行う事業者が、その事業の実施に当たりあらかじめその事業に係る環境への影響について自ら適正に調査、予測又は評 | **제20조**（환경영향평가의 추진）<br>국가는 토지 형상의 변경, 공작물의 신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직접 적절히 조 |

| | |
|---|---|
| 価を行い、その結果に基づき、その事業に係る環境の保全について適正に配慮することを推進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 사, 예측 또는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第二十一条**（環境の保全上の支障を防止するための規制）<br>国は、環境の保全上の支障を防止するため、次に掲げる規制の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br>一 大気の汚染、水質の汚濁、土壌の汚染又は悪臭の原因となる物質の排出、騒音又は振動の発生、地盤の沈下の原因となる地下水の採取その他の行為に関し、事業者等の遵守すべき基準を定めること等により行う公害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規制の措置<br>二 土地利用に関し公害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規制の措置及び公害が著しく、又は著しくなるおそれがある地域における公害の原因となる施設の設置に関し公害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規制の措置<br>三 自然環境を保全することが特に必要な区域における土地 | **제21조**（환경보전상의 장애 방지를 위한 규제）<br>① 국가는 환경보전상의 장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br>1.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또는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또는 진동의 발생,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의 채취,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br>2. 토지이용에 관하여 공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 및 공해가 심하거나 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br>3. 자연환경의 보존이 특히 필요한 구역에서의 토지 형 |

| | |
|---|---|
| の形状の変更、工作物の新設、木竹の伐採その他の自然環境の適正な保全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行為に関し、その支障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規制の措置 | 상의 변경, 공작물의 신설, 목죽(木竹)의 벌채, 그 밖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그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 |
| 四 採捕、損傷その他の行為であって、保護することが必要な野生生物、地形若しくは地質又は温泉源その他の自然物の適正な保護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ものに関し、その支障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規制の措置 | 4. 채취·포획, 손상, 그 밖의 행위로서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 지형이나 지질 또는 온천원, 그 밖의 자연물의 적정한 보호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관하여 그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 |
| 五 公害及び自然環境の保全上の支障が共に生ずるか又は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これらを共に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規制の措置 | 5. 공해 및 자연환경의 보전상 장애가 함께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동시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 |
| 2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国は、人の健康又は生活環境に係る環境の保全上の支障を防止するため、同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措置に準じて必要な規制の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 ②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국가는 인간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한 환경보전상의 장애 방지를 위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 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
|---|---|
| **第二十二条**（環境の保全上の支障を防止するための経済的措置）<br>国は、環境への負荷を生じさせる活動又は生じさせる原因となる活動（以下この条において「負荷活動」という。）を行う者がその負荷活動に係る環境への負荷の低減のための施設の整備その他の適切な措置をとることを助長することにより環境の保全上の支障を防止するため、その負荷活動を行う者にその者の経済的な状況等を勘案しつつ必要かつ適正な経済的な助成を行う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br>２ 国は、負荷活動を行う者に対し適正かつ公平な経済的な負担を課すことによりその者が自らその負荷活動に係る環境への負荷の低減に努めることとなるように誘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施策が、環境の保全上の支障を防止するための有効性を期待され、国際的にも推奨されていることにかんがみ、その施策に関し、これに係る措置を講じた場合における環境の保全上の支障の防止に係る効果、我が国の経済に与える影響等を適切に調査 | **제22조**（환경보전상 장애 방지를 위한 경제적 조치）<br>① 국가는 환경부하를 발생시키는 활동 또는 발생 원인이 되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부하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그 부하활동과 관련된 환경부하저감을 위한 시설의 정비,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장려함으로써 환경보전상 장애 방지를 위하여 그 부하활동을 하는 자에게 그 자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필요하고 적정한 경제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br><br>② 국가는 부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적절하고 공평하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그 자가 직접 그 부하활동과 관련된 환경부하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 환경보전상 장애 방지를 위한 유효성이 기대되고 국제적으로도 장려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시책에 관하여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한 경우의 환경보전상 장애 방지와 관련된 효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절히 조사·연구하고 그 |

| | |
|---|---|
| し及び研究するとともに、その措置を講ずる必要がある場合には、その措置に係る施策を活用して環境の保全上の支障を防止することについて国民の理解と協力を得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措置が地球環境保全のための施策に係る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効果が適切に確保されるようにするため、国際的な連携に配慮するものとする。 |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와 관련된 시책을 활용하여 환경보전상 장애 방지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그 효과가 적절히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고려한다. |
| **第二十三条**（環境の保全に関する施設の整備その他の事業の推進）<br>国は、緩衝地帯その他の環境の保全上の支障を防止するための公共的施設の整備及び汚泥のしゅんせつ、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保護増殖その他の環境の保全上の支障を防止するための事業を推進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br>２ 国は、下水道、廃棄物の公共的な処理施設、環境への負荷の低減に資する交通施設（移動施設を含む。）その他の環境の保全上の支障の防止に資する公共的施設の整備及び森林の整備その他の環境の保全上の支障の防 | **제23조**（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의 정비, 그 밖의 사업의 추진）<br>① 국가는 완충지대, 그 밖의 환경보전상 장애 방지를 위한 공공적 시설의 정비 및 오니(汚泥, sludge) 준설,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그 밖의 환경보전상 장애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br>② 국가는 하수도, 폐기물의 공공 처리시설, 환경부하저감에 도움이 되는 교통시설(이동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의 환경보전상 장애 방지에 도움이 되는 공공 시설의 정비 및 삼림의 정비, 그 밖의 환경보전상 장애 |

| | |
|---|---|
| 止に資する事業を推進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br>3 国は、公園、緑地その他の公共的施設の整備その他の自然環境の適正な整備及び健全な利用のための事業を推進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br>4 国は、前二項に定める公共的施設の適切な利用を促進す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これらの施設に係る環境の保全上の効果が増進され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 방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br>③ 국가는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공적 시설의 정비, 그 밖의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br>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적 시설의 적절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그 밖의 이들 시설과 관련된 환경보전상 효과가 증진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第二十四条**（環境への負荷の低減に資する製品等の利用の促進）<br>国は、事業者に対し、物の製造、加工又は販売その他の事業活動に際して、あらかじめ、その事業活動に係る製品その他の物が使用され又は廃棄されることによる環境への負荷について事業者が自ら評価することにより、その物に係る環境への負荷の低減について適正に配慮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技術的支援等を行うため、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 **제24조**（환경부하저감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의 이용 촉진）<br>① 국가는 사업자에게 물건의 제조, 가공 또는 판매, 그 밖의 사업활동 시에 사전에 그 사업활동과 관련된 제품,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거나 폐기로 인한 환경 부하에 대하여 사업자가 직접 평가함으로써 그 물건에 관한 환경부하저감에 대하여 적정히 배려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 |
|---|---|
| 2 国は、再生資源その他の環境への負荷の低減に資する原材料、製品、役務等の利用が促進されるよう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 ② 국가는 재생자원, 그 밖의 환경부하저감에 도움이 되는 원재료, 제품, 용역 등의 이용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第二十五条**（環境の保全に関する教育、学習等）<br>国は、環境の保全に関する教育及び学習の振興並びに環境の保全に関する広報活動の充実により事業者及び国民が環境の保全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これらの者の環境の保全に関する活動を行う意欲が増進されるように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학습 등）<br>국가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의 진흥, 환경보전에 관한 충실한 홍보활동으로 사업자 및 국민이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아울러 이들의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 의욕이 증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第二十六条**（民間団体等の自発的な活動を促進するための措置）<br>国は、事業者、国民又はこれらの者の組織する民間の団体（以下「民間団体等」という。）が自発的に行う緑化活動、再生資源に係る回収活動その他の環境の保全に関する活動が促進されるよう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 **제26조**（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br>국가는 사업자, 국민 또는 이들이 조직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녹화(緑化)활동, 재생자원과 관련된 회수활동,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 |
|---|---|
| **第二十七条**（情報の提供）<br>国は、第二十五条の環境の保全に関する教育及び学習の振興並びに前条の民間団体等が自発的に行う環境の保全に関する活動の促進に資するため、個人及び法人の権利利益の保護に配慮しつつ環境の状況その他の環境の保全に関する必要な情報を適切に提供す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 **제27조**（정보의 제공）<br>국가는 제25조의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의 진흥, 제26조의 민간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의 촉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이익 보호를 고려하면서 환경 상황,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 **第二十八条**（調査の実施）<br>国は、環境の状況の把握、環境の変化の予測又は環境の変化による影響の予測に関する調査その他の環境を保全するための施策の策定に必要な調査を実施するものとする。 | **제28조**（조사의 실시）<br>국가는 환경 상황의 파악, 환경 변화의 예측 또는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의 예측에 관한 조사,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책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
| **第二十九条**（監視等の体制の整備）<br>国は、環境の状況を把握し、及び環境の保全に関する施策を適正に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監視、巡視、観測、測定、試験及び検査の体制の整備に努めるものとする。 | **제29조**（감시 등 체제의 정비）<br>국가는 환경 상황을 파악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적절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감시, 순찰, 관측, 측정, 시험 및 검사 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한다. |

| | |
|---|---|
| **第三十条**（科学技術の振興）<br>国は、環境の変化の機構の解明、環境への負荷の低減並びに環境が経済から受ける影響及び経済に与える恵沢を総合的に評価するための方法の開発に関する科学技術その他の環境の保全に関する科学技術の振興を図るものとする。<br>２ 国は、環境の保全に関する科学技術の振興を図るため、試験研究の体制の整備、研究開発の推進及びその成果の普及、研究者の養成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 **제30조**（과학기술의 진흥）<br>① 국가는 환경 변화 메커니즘 해명, 환경 부하 저감, 환경이 경제로부터 받는 영향 및 경제에 미치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에 관한 과학기술,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한다.<br>② 국가는 환경보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체제의 정비, 연구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연구자의 양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第三十一条**（公害に係る紛争の処理及び被害の救済）<br>国は、公害に係る紛争に関するあっせん、調停その他の措置を効果的に実施し、その他公害に係る紛争の円滑な処理を図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br>２ 国は、公害に係る被害の救済のための措置の円滑な実施を図るため、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 **제31조**（공해 관련 분쟁의 처리 및 피해의 구제）<br>① 국가는 공해 관련 분쟁에 관한 알선, 조정, 그 밖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그 밖에 공해 관련 분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② 국가는 공해 관련 피해 구제 조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第六節　地球環境保全等に関する国際協力等** | **제6절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 등** |
| **第三十二条**（地球環境保全等に関する国際協力等）<br>国は、地球環境保全に関する国際的な連携を確保することその他の地球環境保全に関する国際協力を推進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ほか、開発途上にある海外の地域の環境の保全及び国際的に高い価値があると認められている環境の保全であって人類の福祉に貢献するとともに国民の健康で文化的な生活の確保に寄与するもの（以下この条において「開発途上地域の環境の保全等」という。）に資するための支援を行うことその他の開発途上地域の環境の保全等に関する国際協力を推進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br>２　国は、地球環境保全及び開発途上地域の環境の保全等（以下「地球環境保全等」という。）に関する国際協力について専門的な知見を有する者の育成、本邦以外の地域の環境の状況その他の地球環境保全等に関する情 | **제32조**（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 등）<br>① 국가는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적 연대 확보, 그 밖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발도상에 있는 해외 지역의 환경보전 및 국제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환경보전으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아울러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개발도상지역의 환경보전 등”이라 한다)에 도움이 되기 위한 지원, 그 밖의 개발도상지역의 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br>② 국가는 지구환경보전 및 개발도상지역의 환경보전 등(이하 “지구환경보전 등”이라 한다)에 관한 국제협력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일본 외 지역 환경의 상황, 그 밖의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 |

| | |
|---|---|
| 報の収集、整理及び分析その他の地球環境保全等に関する国際協力の円滑な推進を図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 리 및 분석, 그 밖의 지구환경 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
| **第三十三条**（監視、観測等に係る国際的な連携の確保等）<br>国は、地球環境保全等に関する環境の状況の監視、観測及び測定の効果的な推進を図るための国際的な連携を確保するように努めるとともに、地球環境保全等に関する調査及び試験研究の推進を図るための国際協力を推進す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 **제33조**（감시, 관측 등에 관한 국제적 연대의 확보 등）<br>국가는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환경 상황의 감시, 관측 및 측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확보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사 및 시험·연구의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
| **第三十四条**（地方公共団体又は民間団体等による活動を促進するための措置）<br>国は、地球環境保全等に関する国際協力を推進する上で地方公共団体が果たす役割の重要性にかんがみ、地方公共団体による地球環境保全等に関する国際協力のための活動の促進を図るため、情報の提供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 **제34조**（지방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br>① 국가는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지방공공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

| | |
|---|---|
| 2　国は、地球環境保全等に関する国際協力を推進する上で民間団体等によって本邦以外の地域において地球環境保全等に関する国際協力のための自発的な活動が行われることの重要性にかんがみ、その活動の促進を図るため、情報の提供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 ② 국가는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일본 외 지역에서 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이 실시되는 것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
| **第三十五条**（国際協力の実施等に当たっての配慮）<br>国は、国際協力の実施に当たっては、その国際協力の実施に関する地域に係る地球環境保全等について配慮す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br>2　国は、本邦以外の地域において行われる事業活動に関し、その事業活動に係る事業者がその事業活動が行われる地域に係る地球環境保全等について適正に配慮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その事業者に対する情報の提供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 **제35조**（국제협력의 실시 등의 배려）<br>① 국가는 국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에 관한 지역과 관련된 지구환경보전 등에 대하여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② 국가는 일본 외 지역에서 실시되는 사업활동에 관하여 그 사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자가 그 활동이 실시되는 지역과 관련된 지구환경보전 등에 대하여 적정히 배려할 수 있도록 그 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

| | |
|---|---|
| 第七節　地方公共団体の施策 | 제7절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
| 第三十六条<br>地方公共団体は、第五節に定める国の施策に準じた施策及びその他のその地方公共団体の区域の自然的社会的条件に応じた環境の保全のために必要な施策を、これら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を図りつつ実施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都道府県は、主として、広域にわたる施策の実施及び市町村が行う施策の総合調整を行うものとする。 | 제36조<br>지방공공단체는 제5절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준한 시책 및 그 밖의 그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도모하면서 실시한다. 이 경우에 도도부현은 광역에 걸치는 시책의 실시 및 시정촌이 실시하는 시책의 종합·조정을 실시한다. |
| 第八節　費用負担等 | 제8절 비용부담 등 |
| 第三十七条（原因者負担）<br>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公害又は自然環境の保全上の支障（以下この条において「公害等に係る支障」という。）を防止するために国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公的事業主体」という。）により実施されることが公害等に係る支障の迅速な防止の必要性、事業の規模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必要かつ適 | 제37조（원인자 부담）<br>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공해 또는 자연환경의 보전상 지장(이하 이 조에서 “공해 등에 관한 지장”이라 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적사업주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것이 공해 등에 관한 지장의 신속한 방지의 필요성, 사업 규모,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 |

| | |
|---|---|
| 切であると認められる事業が公的事業主体により実施される場合において、その事業の必要を生じさせた者の活動により生ずる公害等に係る支障の程度及びその活動がその公害等に係る支障の原因となると認められる程度を勘案してその事業の必要を生じさせた者にその事業の実施に要する費用を負担させることが適当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について、その事業の必要を生じさせた者にその事業の必要を生じさせた限度においてその事業の実施に要する費用の全部又は一部を適正かつ公平に負担させ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 정되는 사업을 공적사업주체가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필요성을 초래한 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공해 등에 관한 지장의 정도 및 그 활동이 그 공해 등에 관한 지장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을 초래한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을 초래한 자에게 그 사업의 필요성을 초래한 한도에서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공평하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第三十八条（受益者負担）<br>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自然環境を保全することが特に必要な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のための事業の実施により著しく利益を受ける者があ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にその受益の限度においてその事業の実施に要する費用の全部又は一部を適正かつ公平に負担させ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 제38조（수익자부담）<br>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연환경의 보전이 특히 필요한 구역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저하게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게 수익의 한도에서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공평하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 | |
|---|---|
| **第三十九条**（地方公共団体に対する財政措置等）<br>国は、地方公共団体が環境の保全に関する施策を策定し、及び実施するための費用について、必要な財政上の措置その他の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 **제39조**（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재정조치 등）<br>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기 위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 조치,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
| **第四十条**（国及び地方公共団体の協力）<br>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環境の保全に関する施策を講ずるにつき、相協力するものとする。 | **제40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협력）<br>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에는 서로 협력한다. |
| **第四十条の二**（事務の区分）<br>第十六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又は市が処理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事務（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は、地方自治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号）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とする。 | **제40조의2**（사무의 구분）<br>제16조제2항에 따라 도도부현 또는 시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지방자치법」(소화22<1947>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제1호 법정위탁사무로 한다. |